

베트남 진출 기업의 기술유출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

2017. 11. 29.



법무법인(유) 화우 호치민/하노이사무실
YOON & YANG

목 차

1 기술유출 현황

2 기술유출 사례

3 유출 유형

4 보호 법제

5 기업의 점검사항

1 | 기술유출 현황

- 출처: 최근 기사, 국가정보원 산업기밀보호센터

1. 기술유출 현황

경찰, 낙달새 139명 검거

올 들어 산업기술 유출 검거 건수가 50%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올 한 해 유출 건수도 200건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

14일 경찰청 산업기술유출수사센터에 따르면 최근 4개월(4~7월)간 적발된 산업기술 유출은 60건, 검거 인원은 139명에 달했다. 발생 건수로 볼 때 전년 동기보다 54% 급증한 규모다. 기술 유출은 해마다 100건 안팎이 적발되지만 이 추세라면 올해는 200건 수준으로 급증할 것 이란 분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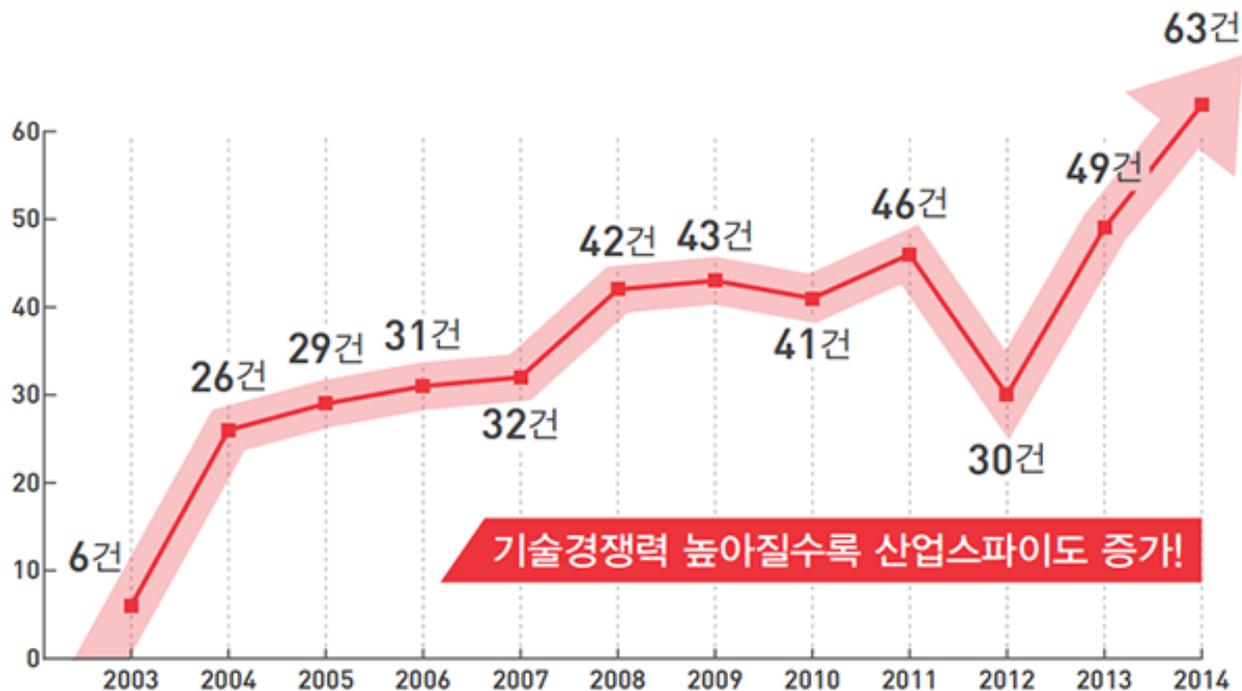


(한국경제 2017. 8. 15.자 기사 중)

1. 기술유출 현황

■ 연도별 해외 산업스파이 적발 실적

⚠ 총 438건 적발!



“산업스파이는 21세기 가장 큰 사업 중 하나이며,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 미래학자 앨빈 토플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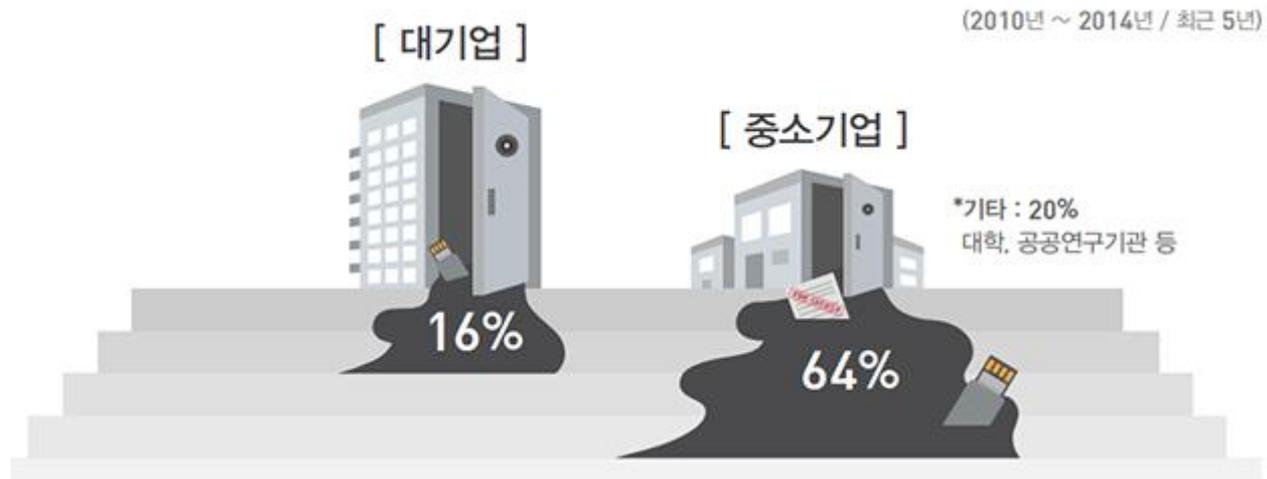
1. 기술유출 현황

▪ 기술유출 예상 피해액



1. 기술유출 현황

▪ 피해기업 규모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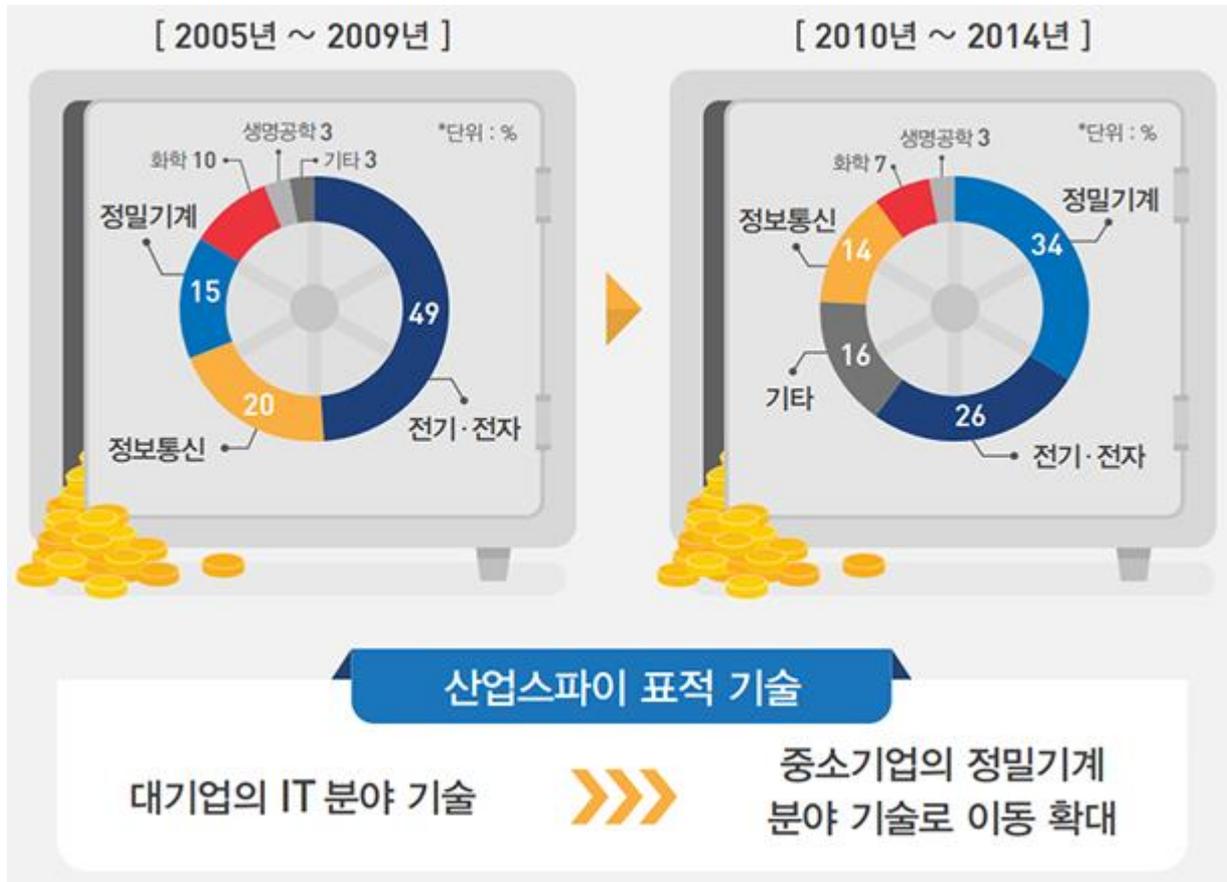


▪ 피해 업체 10 곳 중 4 곳은 기술유출 확인 후에도 무대응

(2017. 8. 15.사 한국경제신문 기사 중)

1. 기술유출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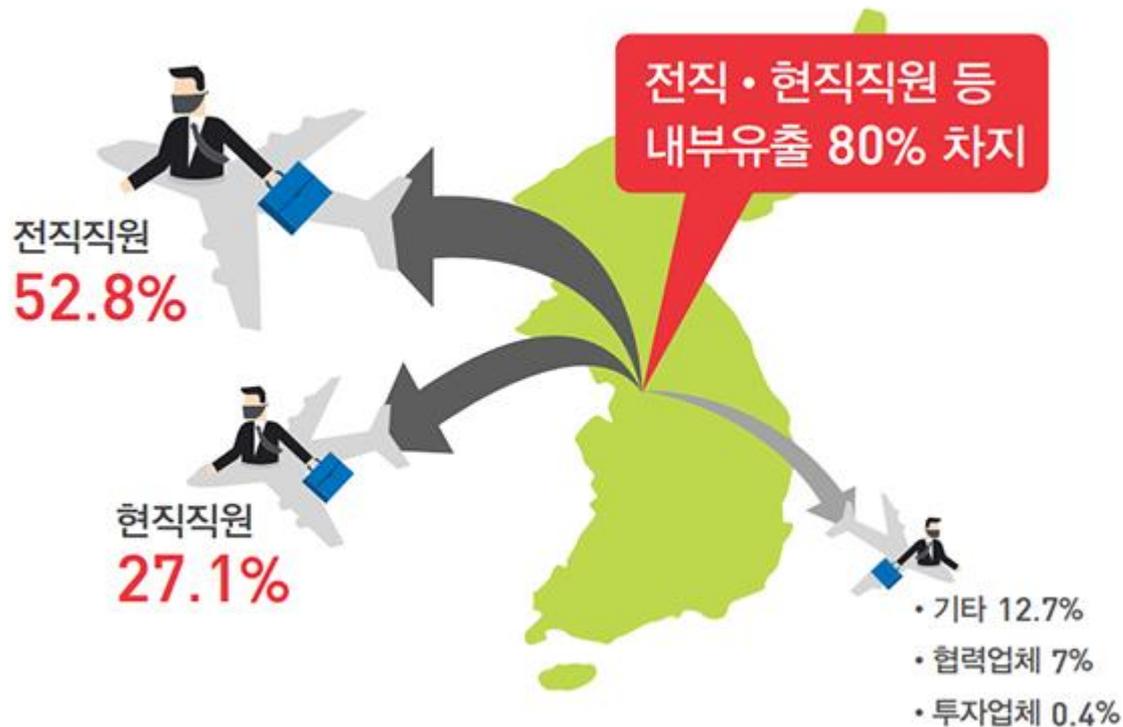
■ 기술유출 분야별 현황



1. 기술유출 현황

▪ 산업스파이 주체

(2010년 ~ 2014년 / 최근 5년)



기술의 가치를 잘 알고 접근권한이 있는 사람에 의한 유출이 대다수

1. 기술유출 현황

■ 기술유출 사건의 특징



▶ 첨단 기술유출

- 해킹 통한 유출
- M&A를 가장한 기술 유출
- 스마트폰·외장하드 등 대용량 저장장치 활용
- 사내 보안시스템 우회 유출기도

-> 유출범행의 79% 이메일 또는 외장메모리 등 이용(2017. 8. 15. 한국경제신문 기사 중)



▶ 지식재산 침해

- 우리 세계 일류상품 기술뿐만 아니라 지재권까지 침해
- 위·모조품 해외 대량 생산 + 판매
- 정품 부품 불법유출 + 제3국에서 조립, 모조품 생산



▶ 방산기술·전략물자 유출

- 취업 및 거래 빌미로 방산기술 유출
- 軍用 전략물자 우회적 불법수출
- 전·현직 군인의 해외 방산업체 연계 군사기밀 유출

1. 기술유출 현황

산업스파이 사건의 징후는?

[중복응답 문항]

- 핵심인력/임원 돌연 퇴직/경쟁사 이직 **51.1%**
- 타기업 유사제품 생산 **38.4%**
- 내부직원에 의한 내부 정보 불법 유출 시도 **30.1%**
- 고객기업 거래가격 인하 요구/거래선 교체 **26.3%**
- 외부로부터의 지속적 해킹 시도 **16.5%**
- 공동연구/합작투자 의향서 체결 후 계약연기 **12.0%**
- 생산제품 주문량/매출액 급감 **11.3%**
- 고객기업의 주요자료 요구 **9.0%**
- 기타 **3.8%**



기술유출사고 발생 원인은?

[중복응답 문항]



(보안24, 2016. 3. 16.자 기사 중)

1. 기술유출 현황

해외유출 산업기술 증가추세, 최근 5년간 239건

정밀기계 기술 유출 가장 많아..."조선업 인력 경쟁국에 가면 기술 유출될 수도"

2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정우택 새누리당 의원에 따르면 해외 기술유출 적발건수는 2011년 46건, 2012년 30건, 2013년 49건, 2014년 63건에 이어 지난해 51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7월 **현대-기아차**가 개발 중인 신형 자동차 부품 설계도면 200여건을 중국으로 유출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유출된 설계도면은 중국 자동차업체의 신차 개발 사업에 쓰인 것으로 드러났다. 현대차는 이로 인한 피해액을 700억원 정도로 추산했다. 이처럼 최근 5년간 해외로 유출된 국내 산업기술이 239건에 이른다. 최근 철강·석유화학·해운 등의 업종을 중심으로 구조조정 논의가 진행되고 있어, 이 과정에서 주요 기술이 중국 등 경쟁국으로 유출될 가능성이 높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6월 **현대중공업**이 자체 개발한 선박용 엔진 '힘센엔진'의 주요 부품인 실린더 헤드 기술을 훔친 일당 8명이 잡혔다. 현대중공업이 10년간 연구 끝에 2000년 국내 최초로 독자 개발한 이 엔진은 중형 엔진 분야에서 세계 시장 점유율 22%로 1위를 달리고 있다. 기술 유출 사건을 업종별로 따져보면, 정밀기계가 32.8%로 가장 많고 전기·전자 25.7%, 정보·통신 12.5%, 정밀화학 6.1%, 생명공학 3.6% 등이었다.

기업 규모별로는 중소기업 64%, 대기업 16%, 기타 공공연구기관 등이 20%로 중소기업의 보안이 가장 취약했다.

2016.9.28자 비즈니스포스트 기사, 2016.9.29자 조선비즈 기사

1. 기술유출 현황

한국경제

입력: 2008-06-15 19:09:20 / 수정: 2008-06-16 10:47:08

중국베트남진출 한국기업 10곳 중 3곳 "기술유출 피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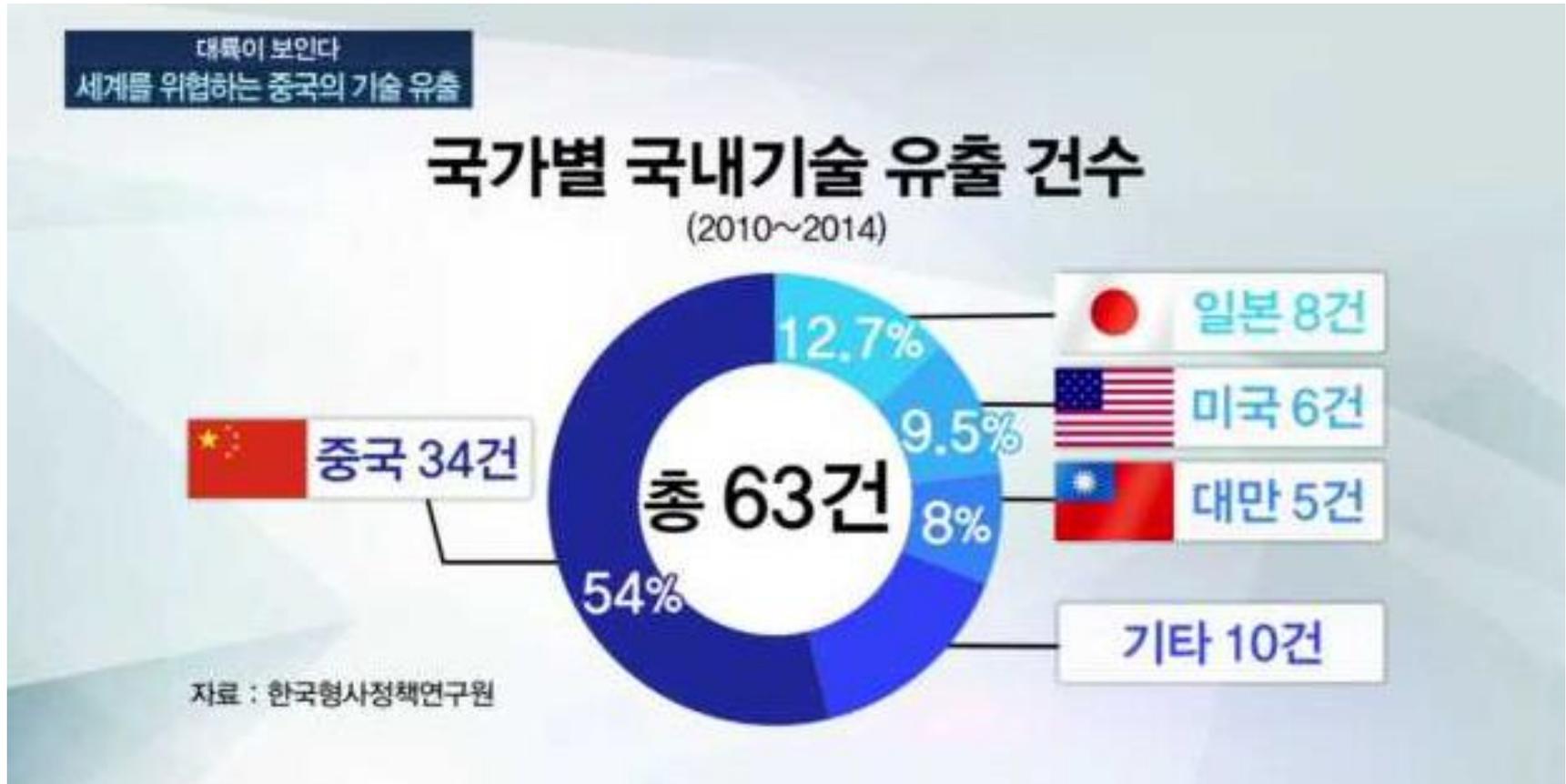
중국과 베트남에 진출한 국내기업 10곳 중 3곳가량은 기술유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청(청장 홍석우)은 최근 중국과 베트남에 진출한 현지 한국기업 65개사를 대상으로 산업보안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응답기업의 27.7%가 해외 진출 후 산업기밀의 외부 유출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국내 기업의 유출비율인 17.8%(2007년 6월, 중기청 기술유출실태조사)에 비해 훨씬 높은 수준이다.

특히 전체 응답기업의 66.7%는 회사의 중요 정보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투자를 전혀 하지 않고 있으며, 유출기업 중에서도 38.9%는 2회 이상 반복적인 유출피해를 입었다고 응답하는 등 해외진출 기업의 보안 인프라가 열악한 것으로 분석됐다.

1. 기술유출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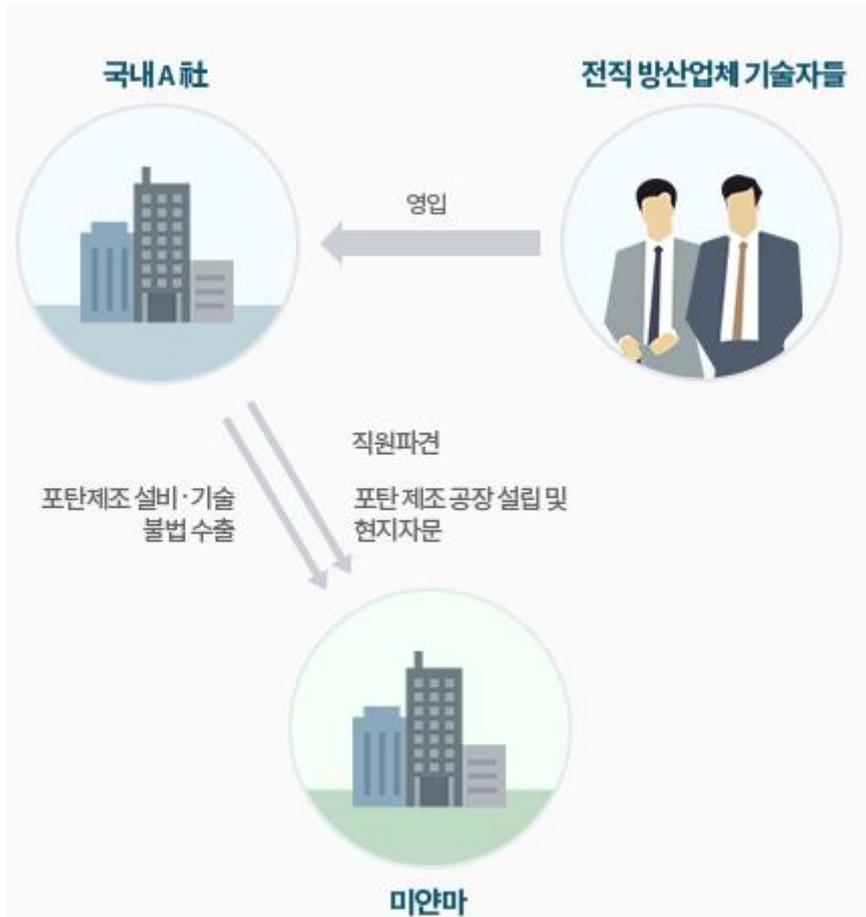


2 | 기술유출 사례

- 출처: 최근 기사, 국가정보원 산업기밀보호센터

2. 기술유출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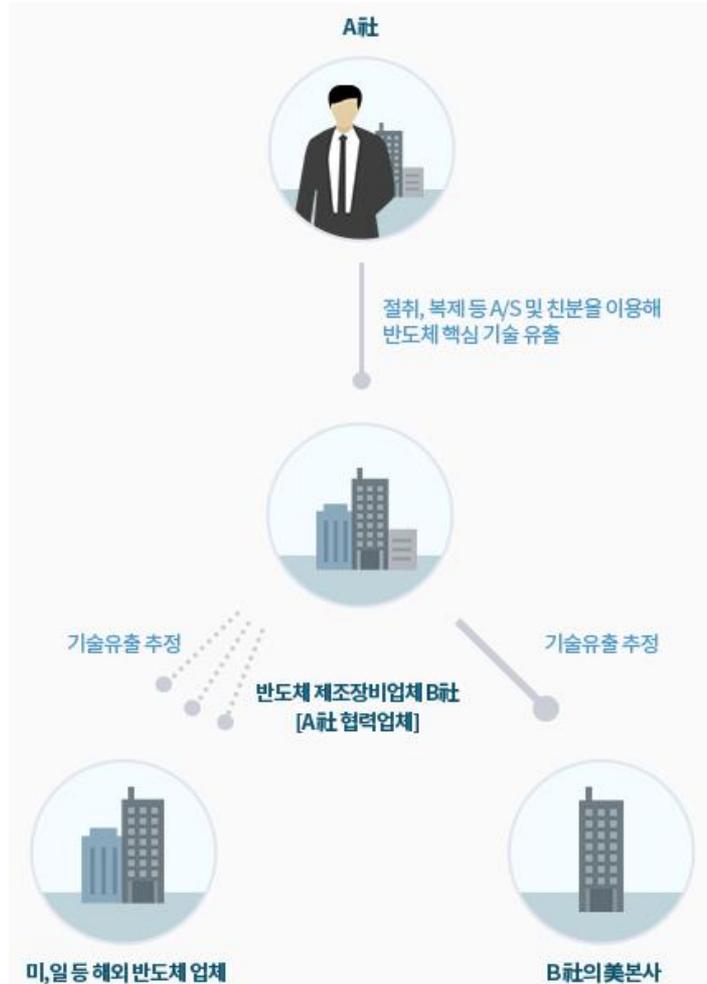
■ 전략물자 및 기술 미얀마 유출 사건



- A사의 K모 대표는 국내 방산업체 출신 기술자들과 공모, 미얀마에 수백억 원 대 규모의 포탄 제조 설비 및 기술(전략물자 기술)을 불법 유출
- 검찰은 K모 대표를 구속 기소하고 방산업체 출신 직원 2명 및 회사를 불구속 기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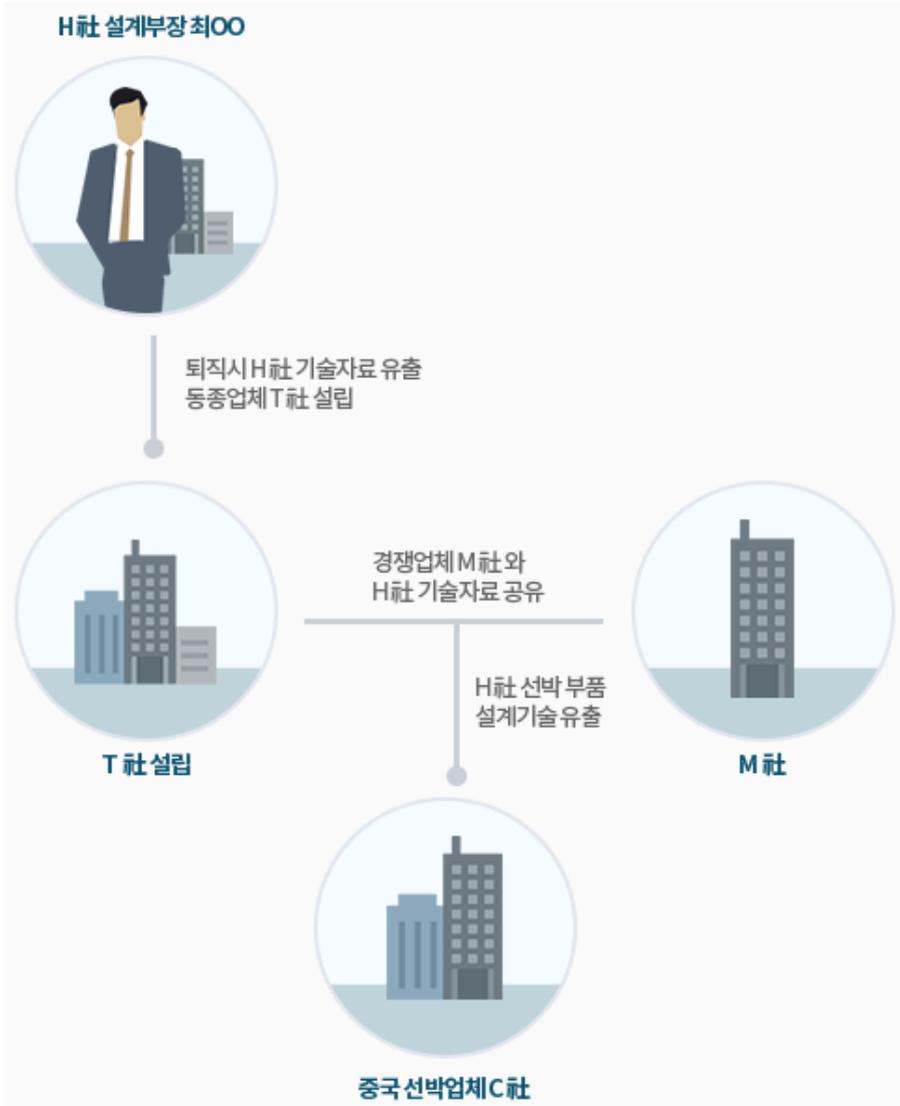
2. 기술유출 사례

■ 반도체 핵심기술 해외 유출 사건-유사케이스(아몰레드 기술 유출)



- 반도체 제조회사 A社에 반도체 장비를 납품하는 협력업체 B社は A/S등을 빙자해 영업비밀 서류를 절취하거나 친분을 이용해 A社の 영업기밀을 빼내는 수법으로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된 A社の 반도체 핵심기술을 해외로 유출하다 적발
- 사건은 전·현직 직원에 의한 기술유출이 아닌 협력업체 직원에 의해 이뤄졌다는 점에서 협력업체에 대한 보안관리 강화의 필요성을 일깨워준 기술유출 사건

2. 기술유출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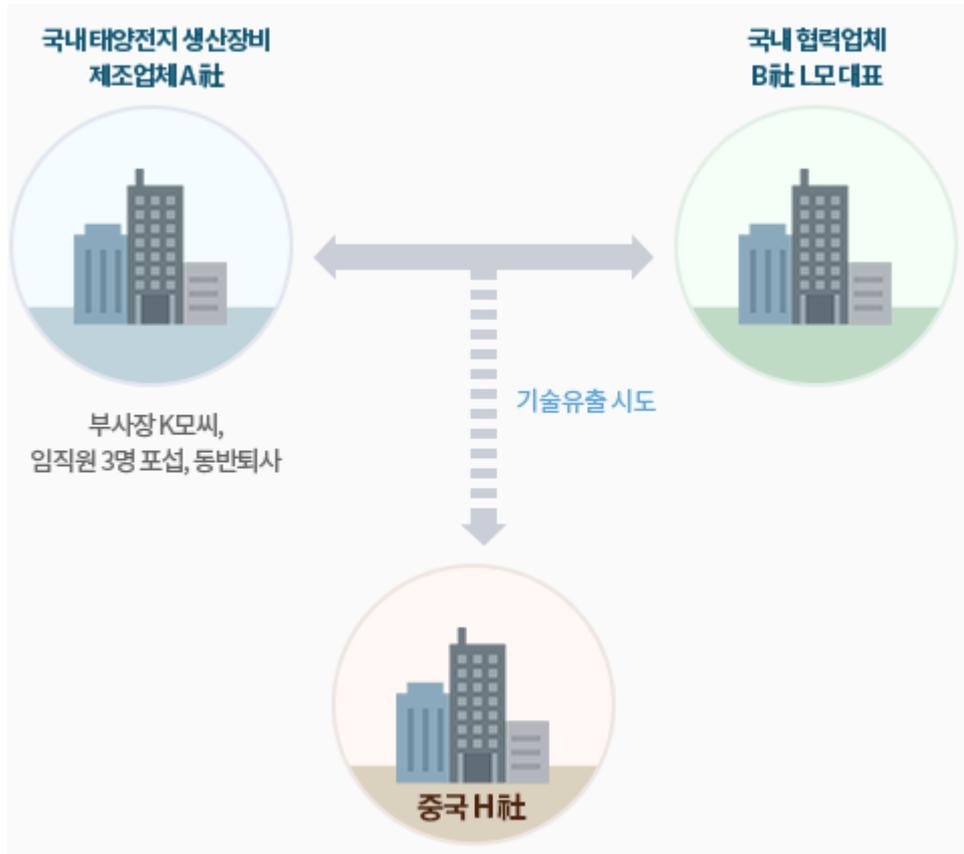


■ 선박 부품 설계기술 중국 유출 사건

- 국가 R&D자금 수십억원을 투입하여 개발한 H社의 선박부품 설계기술을 전 설계부장 최모씨 등 3명이 퇴직하면서 관련기술 일체의 외장형 하드에 담아 유출한 후, 동종업체를 설립하고 관련 기술을 중국에 불법 유출

2. 기술유출 사례

■ 태양전지 생산장비 제조기술 중국 유출 사건



- A社의 부사장 K모씨는 2011.06 개인노트북 등에 기밀자료 무단저장사실 적발로 징계받은 이후, 같은 회사 임직원 3명을 포섭, 설계도면 등 핵심자료 지속수집
- 또한, 협력업체(B社) L모 대표 등과 11월 ~ 12월 中 H社 소주LCD사업장 방문, 필요한 기술을 지원키로 합의 후 귀국 하였으며 2012.03 중 임직원 3명과 동반 퇴사 후 중국 출국을 기도 중인 사실 적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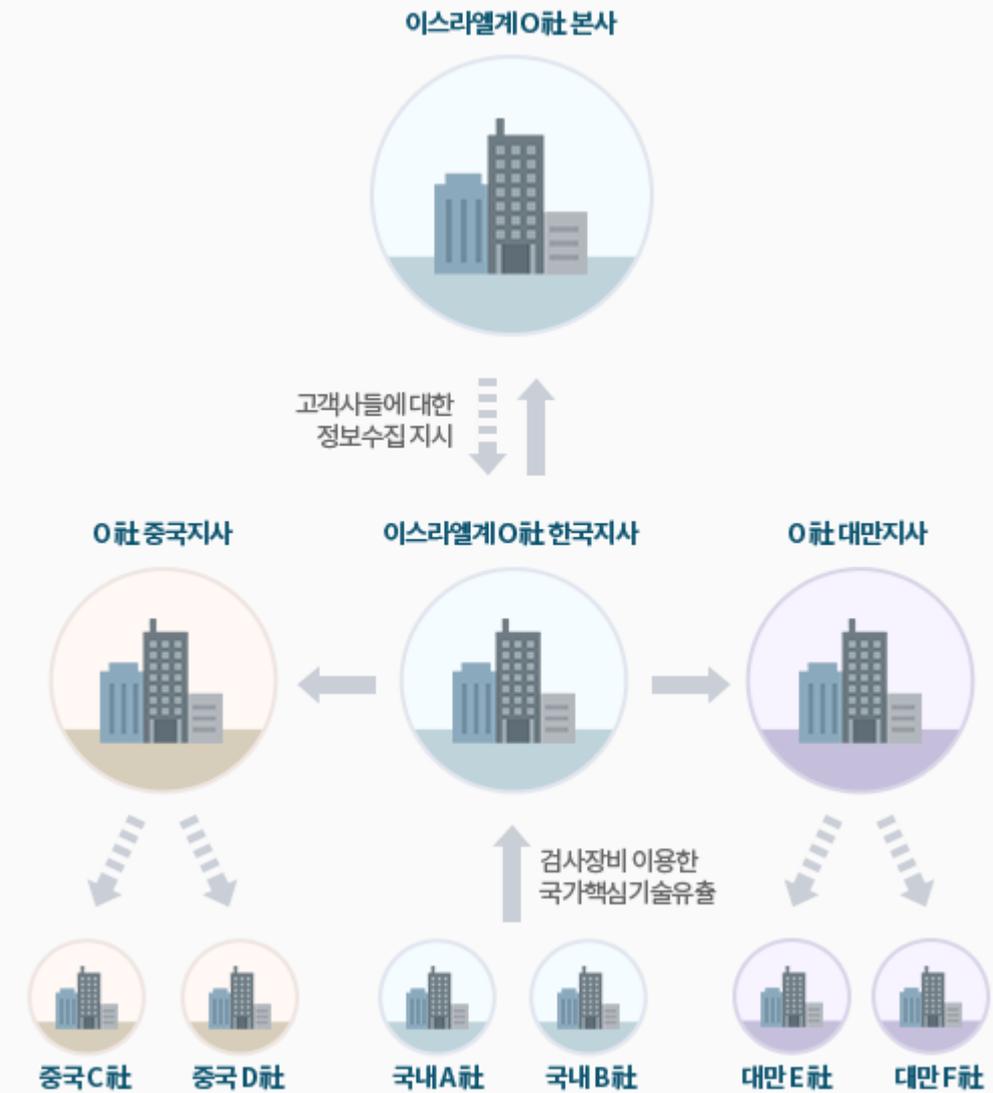
2. 기술유출 사례

▪ 자동차 핵심 제조기술 러시아 유출 사건



- 러시아 신생 자동차 조립업체 T社가 외국인 투자를 빙자, 국내에 한국지사를 설립한 후 D社의 前 R&D센터장 등 핵심기술인력 200여명을 스카우트하고 엔진 설계기술 등을 유출, D사의 기술을 T사 신차개발에 활용

2. 기술유출 사례



■ 차세대 디스플레이 기술 유출 사건

- 디스플레이패널 검사장비 업체 이שראל 기업 O社의 L부장 등 6명은 국내 디스플레이 업체 A社와 B社에 납품한 '광학검사 장비' 운용·기술지원 등을 위해 파견 근무하면서 자체 제작한 신용카드형 USB메모리 또는 신발·벨트 등에 은닉해 반입한 USB메모리를 이용, 55인치 AMOLED패널 극비자료와 몰래 촬영한 다수의 국가핵심기술을 저장, 불법 유출
- 유출 자료를 이שראל 소재 본사 서버로 전송, 해외경쟁사와 공유토록 하는 등 A社와 B社가 막대한 개발비를 투입, 세계 최초 상용화에 성공한 대용 OLED TV기술을 해외로 유출

2. 기술유출 사례

삼성전자 임원 구속, 스마트폰 기술자료 中 유출 혐의

장주영 기자 | 2016-09-23 11:25:25 | 사회일반



삼성전자 임원 구속, 스마트폰 기술자료 中 유출 혐의

이씨는 지난 5월부터 2개월 간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 국가핵심기술로 고시된 14나노 시스템반도체 애플리케이션프로세서(AP) 제조 공정의 전체 흐름도와 10나노 제품 정보 등 68개 영업비밀 자료를 유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3 | 유출 유형

3. 유출 유형 - 실무상 문제되는 유형

III 1. 전·현직 임직원에 의한 유출

- 현직직원 매수, 핵심설계도면 일본 유출
- 전(前)회사 직원과 공모, 퇴직 후 회사설립 후 무선모뎀 핵심기술 유출
- 전직 간부 경쟁사로 이전하면서 자신이 개발에 참여한 핵심기술 유출

III 2. 경쟁기업의 핵심인력 스카우트에 의한 유출

- H사 박모 전무와 홍모 상무는 경쟁사인 Y사의 차량용 AV 시스템 기술개발을 담당하고 있던 연구원 7명을 빼내 별도의 C사를 설립하고 H사에 AV 시스템 납품함과 동시에 기술자료를 팔아 넘김
- B사는 신장병 치료약 및 치료기구 등을 비롯한 의료기를 수입·판매하는 회사인데, 국내 판매 및 가격결정의 권한을 가진 판매책임자 C를 고용하면서 퇴직 후 1년 동안 경쟁사에서 직·간접적으로 그 업무에 종사하지 않겠다는 약정을 하였으나, 이후 C는 동업종 경쟁사의 책임자로 전직

3. 유출 유형 - 실무상 문제되는 유형

III 3. 컨설팅, 기술자문업체에 의한 유출

- 기계부품세척기 개발회사에 기술닥터로 일하면서 미국 환경청 안전검사 승인을 받게 해주겠다고 영업비밀자료 건네 받아 미국회사에 넘기려 한 경우
- 대기업을 상대로 인사조직 분야 컨설팅 교육을 해온 전문가가 인사 급여 프로그램 제작업체의 전 개발부장과 짜고 회사의 주력제품인 프로그램 설계도를 빼내 이를 토대로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 판매한 경우

III 4. 위장 투자 등에 의한 유출

- 자금압박을 받던 회사가 국내 유수의 모 전자회사로부터 투자제의를 들어오자 투자 상담하는 과정에서 핵심자료 제공, 이후 투자제의 했던 모 전자회사가 투자를 철회하고 제공받은 자료를 토대로 독자제품 출시

3. 유출 유형 - 영업비밀 침해행위

III 부정취득행위

- 영업비밀을 부정취득 · 사용 · 공개하는 행위
- 부정취득 된 영업비밀을 악의 · 중과실로 취득 · 사용 · 공개하는 행위
- 선의취득 후 악의 · 중과실에 의한 사용 · 공개 행위

III 부정공개행위

- 영업비밀을 부정공개 · 사용하는 행위
- 부정공개된 영업비밀을 악의 · 중과실로 취득 · 사용 · 공개하는 행위
- 선의취득 후 악의 · 중과실에 의한 사용 · 공개 행위



4 | 보호 법제

4. 보호 법제 - 대한민국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산업기술보호법)

• 대상

1) 산업기술

가. 「산업기술보호법」제9조에 따라 고시된 국가핵심기술
나.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라 고시된 첨단기술의 범위에 속하는 기술
다.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에 따라 인증된 신기술
라.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에 따라 지정·고시된 새로운 전력기술
마.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에 따라 인증된 신기술
바.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새로운 건설기술
사.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8조에 따라 인증된 보건신기술
아.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핵심 뿌리기술

2) 국가핵심기술

국내외 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거나 관련 산업의 성장잠재력이 높아 해외로 유출될 경우에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기술로서 「산업기술보호법」 제9조에 따라 지정된 것

4. 보호 법제 - 대한민국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산업기술보호법)

• 벌칙 (산업기술보호법 제36조 내지 제39조)

- 산업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유출 또는 침해한 경우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 (예비·음모한 자는 3년 이하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산업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 없이 유출 및 침해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억원 이하의 벌금 (예비·음모한 자는 2년 이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부정취득행위 또는 부정유출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산업기술을 취득·사용 및 공개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
-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자가 비밀을 누설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4. 보호 법제 - 대한민국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

➤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 대상

- 생산방법
- 판매방법
-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 영업비밀의 3요건

- 비공지성
 - ✓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 경제적 유용성
 - ✓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 비밀유지성(비밀관리성)
 - ✓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
 - ✓ “합리적인 노력” vs. “상당한 노력” (2015. 1. 28. 개정 시행)



4. 보호 법제 - 대한민국

비밀유지성(비밀관리성) 판단기준의 변화
 “합리적인 노력” vs. “상당한 노력” (2015. 1. 28. 개정 시행)

☞ “상당한 노력”을 “합리적인 노력”으로 완화하여 중소기업이 처한 현실적 여건을 고려할 수 있게 하였음(법안설명자료 및 의정부 2016. 9. 27. 선고 2016노1670 판결)

<개정 전 법률 하에서의 판단기준>

상당한 노력의 판단기준 : 접근 제한 + 객관적 인식가능성			
① 물리적, 기술적 관리	② 인적, 법적 관리	③ 조직적 관리	(부차적 요소) 종업원의 수 기업의 규모

<개정된 법률 하에서의 판단기준>

합리적 노력의 판단기준 : 접근 제한 + 객관적 인식가능성		
① 물리적, 기술적 관리	② 인적, 법적 관리	③ 조직적 관리
영업비밀 보유 기업의 규모, 해당 정보의 성질과 가치, 해당 정보에 일상적인 접근을 허용하여야 할 영업상 필요성이 존재하는지 여부, 영업비밀 보유자와 침해자 사이의 신뢰관계, 과거에 영업비밀을 침해당한 전력이 있는지 여부 등에 기초하여 판단함.		



4. 보호 법제 - 대한민국

부정경쟁방지법 일부개정안

- **영업비밀 정의규정 정비(안 제2조)**
기업 등의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가 '합리적인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 되어야만 영업비밀로 인정받던 것을 '합리적인 노력'이 없더라도 '비밀로 유지'만 되었다면 영업비밀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인정요건을 완화함.
-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업무범위 확대(안 제7조, 제8조, 제17조, 제17조의3, 안 제20조 등)**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 지식재산 침해에 대한 단속업무를 지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단속 권한이 없어 집행에 한계가 있었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조사, 시정권고 업무범위를 확대함.
- **영업비밀을 악의적으로 침해한 경우 3배 이내의 손해배상액 인정규정 신설(안 제14조의2 제6항)**
영업비밀의 악의적 침해를 억제하기 위하여 침해자의 고의의 정도, 침해행위의 기간 및 횟수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실손해 배상액의 3배 이내에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함.
- **영업비밀 침해행위 등에 대한 벌칙규정 정비(안 제18조)**
정당한 권한을 넘어 영업비밀을 유출 또는 보유하거나, 절취, 기망, 협박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등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대상범위를 확대하고, 등록받지 않은 상품의 디자인을 그대로 모방하는 상품 형태모방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4. 보호 법제 - 대한민국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
 - 벌칙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내지 제20조)

구분	처벌행위
침해주체	누구든지
보호대상	영업비밀
위법성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손해를 가할 목적
침해행위	국내 :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는 행위 외국 :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 취득·사용 또는 제3자에게 누설하는 행위
소추요건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소추가능
처벌형량	국내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단, 재산상 이득액 10배가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득액의 2~10배의 벌금) 외국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단, 재산상 이득액 10배가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득액의 2~10배의 벌금)
미수,예비/음모	제18조의2(미수), 제18조의3(예비·음모) 규정에 의하여 처벌

4. 보호 법제 - 베트남

■ 지식재산권법

- 지식재산권법 제3조 제2호
산업재산권의 객체는 발명, 산업디자인,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 영업비밀, 표장, 상호 및 지리적 표시를 포함한다.
- 지식재산권법 제4조 제1호
지식재산권이라 함은 저작권, 저작인접권, 산업재산권 및 식물신품종보호권을 비롯하여 지적 자산에 대한 단체 및 개인의 권리를 뜻한다.
- 지식재산권법 제4조 제4호
산업재산권은 발명, 산업디자인,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 영업비밀, 표장, 상호, 지리적 표시에 대한 단체 및 개인의 권리 및 그 단체나 개인이 창작하거나 소유하는 영업비밀, 그리고 부정경쟁을 방지할 권리를 뜻한다.

■ ‘영업비밀’이란

- 지식재산권법 제4조 제23호
영업비밀이라 함은 아직 공개되지 않아서 영업에 이용할 수 있는 재정적이거나 지적인 투자활동으로부터 획득한 정보를 뜻한다.
- 지식재산권법 제6조 제3호 c.
영업비밀에 대한 산업재산권은 적법한 취득 및 비밀성을 토대로 성립한다.

4. 보호 법제 - 베트남

■ 영업비밀 보호조건(지식재산법 제84조)

- 기본 상식이거나 쉽게 얻을 수 없는 정보
- 해당 정보를 사용하지 않거나 갖고 있지 않은 사람보다 갖고 있는 사람이 사업할 때 유리한 경우
- 영업비밀 사항을 간직하고 있는 보유자가 그 비밀사항이 외부에 노출되거나 쉽게 알려지지 않게 필요한 조치로 그 비밀을 유지할 경우

■ 개인적인 식별정보, 국가 관리 비밀, 국가방어 및 안전비밀, 기타 사업상 기밀로 취급하기 부적합한 것은 민간의 영업비밀로 보지 않음

■ 영업비밀 보유자 (지식재산법 제121조)

- 해당 기밀사항을 합법적으로 알아내었고 계속 기밀로 유지하는 단체 또는 개인
- 피고용자가 업무 중에 또는 지정 받은 임무를 수행하던 중에 기밀사항을 얻게 된 경우, 별도의 계약으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그 고용자 또는 임무를 맡긴 사람이 그 정보를 보유

4. 보호 법제 - 베트남

▪ 침해유형 (지재법 제127조 제1항)

- 적법한 영업비밀 관리자가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취한 조치에 대항하여 영업비밀 정보에 접근하거나 수집하는 경우
- 영업비밀 소유자의 허락 없이 해당정보를 공개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 영업비밀유지계약을 위반하거나, 영업비밀에 접근·수집·공개를 목적으로 영업비밀 책임자를 매수, 강제, 속이는 등의 행위
- 권한있는 당국이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취한 조치에 대항하여 거래 또는 유통을 위한 제품 허가 신청자와 관련된 영업비밀 정보에 접근하거나 이를 수집하는 경우
- 위 활동과 관련된 것임을 알았거나 파악했어야 하는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업비밀을 사용 또는 공개하는 경우

- 적법한 영업비밀 관리자
 - 영업비밀 보유자,
 - 그들의 합법적인 라이선시와 비밀관리자

4. 보호 법제 - 베트남

■ 자력보호권 (지재법 제198조 제1항)

-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기술적 보호조치를 적용
- 지식재산권 침해행위를 종료하거나 공개사과 또는 시정조치를 하거나 손해배상을 하도록 지식재산권 침해행위를 한 단체 또는 개인에게 요구
- 지식재산권의 침해행위를 관계행정부처가 다루도록 요청
- 적법한 권리 및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원 또는 중재센터에 소를 제기하거나 중재를 신청
- 지식재산권 침해행위로 말미암아 손해를 입거나 소비자 또는 사회에 손해를 초래하는 지식재산권 침해행위를 알게 된 단체 및 개인은 이 법의 규정 및 그 밖의 법의 관련규정에 따라 관계행정부처가 그러한 행위를 다루도록 요청

■ 민사적 구제 (지재법 제202조)

- 침해행위의 종료를 강제
- 공개사과 및 시정조치를 강제
- 민사적 의무의 이행을 강제
- 손해배상을 강제
-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의 제작 또는 거래에 주로 이용되는 물품, 원재료, 수단의 폐기, 배포 또는 비영리적 목적의 이용을 강제

4. 보호 법제 - 베트남

■ 가치분 (지재법 제207조 제1항)

-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물품 또는 그러한 물품의 제조 또는 거래에 사용되는 원재료, 자료 또는 수단에 대한 압수, 동산압류, 봉인·원상태의 변경금지 및 이동금지, 재산권 이전 금지

■ 행정적 구제 (지재법 제214조 및 개정본 제1조 제28항)

- 지식재산권 침해 활동 강제 종료
- 경고, 벌금
- 위조품 및 위조품을 생산하거나 수입해 얻은 수익에 대한 압수
- 일정기간 영업 정지
- 위조품 및 위조품 생산수단(수입활동 포함)에 대한 파기 혹은 비상업적 목적을 위한 유통 혹은 이용, 위조품 및 위조품 생산수단(수입활동 포함)에 대한 베트남 역외 강제추방
- 수출입 통제

■ 형사처벌 대상

- 침해자가 베트남 10,000,000동 이상의 이익을 향유
- 산업재산권 보유자에게 베트남 50,000,000동을 초과하는 손해가 발생
- 침해재산권의 가치가 베트남 50,000,000동을 초과

4. 보호 법제 - 베트남

▪ 법원

소장제출 → 안건배정(3영업일) → 소장검토(5영업일) → 이상이 없는 경우
소장 정식수리 → 소송비용예납(7영업일) 등으로 진행

** 통상적으로 판결이 나오기까지 6개월 내지 1년이 소요

▪ 경쟁관리당국(검찰,公安, 시장관리국, 세관 및 인민위원회)

신고서 제출 → 신고서 검토(7영업일) → 1차 검토 (30일) → 2차 검토(1차 검토 후 정식검토가 필요하다가 판단하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90일 소요이나 사안에 따라 최대 90일을 더 연장할 수 있음) → 경쟁관리당국의 결정문 발행

5 | 기업의 점검사항

5. 기업의 점검사항

우리 기업의 기술보호 관리 수준과 관리가 어려운 이유는?

기술보호 관리 수준



관리 미흡 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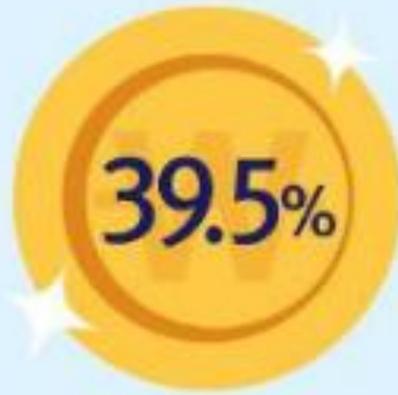


[중복응답 문항]

(보안24, 2016. 3. 16.자 기사 중)

5. 기업의 점검사항

CEO가 생각하는 기술보호 예산은 투자? or 비용?



비용의 개념으로
지출하고 있다



투자와 비용 모두
동등한 개념으로 보고 있다



투자의 개념으로
지출하고 있다



(보안24, 2016. 3. 16.자 기사 중)

5. 기업의 점검사항

III 관리 포인트

- 지식재산 경영에 의한 경쟁력 향상
- “실효적 관리”, “합리적인 관리”
- 준수 및 인적 관리
- 해외, 국내 동일함

5. 기업의 점검사항

III 산업기술 및 영업비밀 관리 요약

- 비밀 정보와 다른 정보의 구분
- 권한에 따라 접근한 사람이 비밀로 인식하고 처리하는데 필요한 조치
- 권한 없는 사람이 액세스 할 수 없도록 조치
- 물리적·기술적 관리, 인적 관리
- 조직적 관리

5. 기업의 점검사항

III 인적 관리 - 계약관리 {제조위탁계약(OEM) 중심}

- 수탁자가 위탁자에 비해 기술수준이 낮은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위탁자에 의한 기술지도가 필수적이며, 이와 관련하여 생산공정, 제조설비, 기술지도 등 전 범위에 걸쳐 기술유출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음. **실제 현장에서 업무 할 경우 번거롭지만 감독직원을 통해 현장 감사해야 함**

구분	대응방안
전략의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동집약적 공정은 해외에서, 기술집약적 공정은 국내 혹은 지식재산권 보호가 가능한 국가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생산에 필요한 것만 현지에 이전해야 함
기술지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품 생산에 필요한 범위 만큼에 대해서만 지도해야 함
생산공정 관련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요한 제조공정 등은 특정 본사로부터 파견된 직원만 관여하도록 조치해야 함
제조설비에 대한 산업기술 보호 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핵심 제조공정이 포함된 도면이나 서류의 블랙박스화를 추진 • 해외에 도면을 제공하는 경우 제조도면상에 게재된 시험방법, 소재정보 등 개발 노하우를 삭제하고 제공해야 함 • CAD/CAM 데이터는 현지 컴퓨터로 읽을 수 없도록 암호화해야 함
설비의 유지, 보수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지보수를 직접 수행하고 부득이하게 현지인을 고용할 경우 출입지역을 한정 • 설비의 판매계약에 제조설비의 정기적인 유지보수 조항을 삽입해야 함

5. 기업의 점검사항

▪ 베트남 기업의 점검사항

- 지식재산권 관련하여, 영업비밀은 반드시 등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자력보호에 충실
- 산업디자인·표장·상호 등은 가능한 등록을 해 두는 것이 바람직
- 현지직원들 채용시 고용계약서에 근무 중 획득한 영업비밀 또는 관련 정보에 대해 외부발설금지 조항을 규정
- 취업규칙에도 이와 관련한 내용을 규정
- 손해배상 예정 규정
- 근로자들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을 통한 경각심과 억지력을 배양
- 적절한 모니터링

End of Document

이근우 변호사

법무법인(유) 화우

klee@hwawoo.com

호치민/하노이 사무실

+84-28-7304-0001/ +84-24-7304-0001

seat@yoonyang.com



법무법인(유) 화우

YOON & YANG